

## 동아옥션 경매약관

###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동아이지에듀 동아옥션(이하“동아옥션”라 한다)가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 그 절차와 제반 기준 및 경매관련자들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조 (현장경매의 성질과 목적)

현장경매는 “동아옥션”이 회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회원 상호간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지,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합니다. 회원 간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은 거래당사자인 회원들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 3조 (정의)

- ① “위탁자”라 함은 본인 소유의 물품을 당사의 경매 방법에 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② “입찰자”라 함은 “동아옥션”의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물을 낙찰 받고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③ “낙찰자”라 함은 “동아옥션”의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물을 낙찰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④ “시작가”라 함은 경매사가 입찰을 시작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⑤ “낙찰가”라 함은 경매사가 비당판 번호를 지칭함으로써 확정된 최고응찰가격을 말합니다.
- ⑥ “구매가”라 함은 낙찰가에 낙찰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합니다.
- ⑦ “내정가”라 함은 당사와 위탁자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사전에 합의한 최저낙찰금가격을 말합니다.
- ⑧ “추정가”라 함은 당사가 경매 물품의 가격대를 추정해본 가격입니다.
- ⑨ 본 약관상에 기한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 4조 (회원)

- ① 입찰자격확인서(회원이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회원과 “동아옥션”(www.dauction.kr)에 가입한 회원은 당사의 정규회원이 됩니다.
- ② 정규 회원은 도록과 온라인상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받으며, 당사가 시행하는 경매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 ③ 준회원은 입찰자격확인서(회원이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동아옥션”에도 미가입한 상태에서 경매응찰을 하려는 회원으로서 당사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 경매장출입 및 경매입찰이 가능한 회원을 말합니다.
- ④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 2) 낙찰대금 등 기타 경매와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다른 사람의 경매 참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회원명의 대여, 담합행위 등 경매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 4) 경매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 또는 약관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 5조 (경매물의 위탁)

① 위탁자는 수시로 경매물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작품의 진위여부에 관하여 시비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본 경매의 특성에 맞지 않거나 경매 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3) 위탁자와 당사 간에 경매물에 대한 시작가를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② 위탁자는 물품위탁 시에 경매 출품에 관련된 기본 경비(도록 등재비, 일반 감정료 등)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위탁자는 이외에 특별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정실비를 특별 감정 출품료로서 지불하여야만 합니다. 유찰이 된 경우에도 출품료는 위탁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 1)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하는 경매물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2) 위탁자는 위탁물품에 대하여 제3자가 유치권, 질권 등 기타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함을 보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위탁자는 낙찰과 동시에 위탁물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됨을 보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4) 위탁물품을 당사에서 경매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당사는 이 사실을 위탁자에 통보하고 위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5일 안에 물품을 인수해야 합니다. 위탁자는 인수 지연 중에 발생하는 작품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하여 당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으며, 당사의 통보 후 7일 경과 후에는 당사 규정의 보관료가 징수됩니다.
- 5) 위탁자는 위탁물품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위탁물품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물품임이 드러나는 경우 그 민형사상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위탁자는 위탁대금 전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당사가 입는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위탁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위탁자는 위탁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별로 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를 합한 금액의 2배를 철회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출발가를 낙찰가격으로 보고 제10조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위탁자의 위탁 철회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위약별 약정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위탁자는 유찰된 물품을 경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고, 15일 경과 후에 발생된 손상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부담하지 않으며, 당사 규정의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⑥ 위탁물품이 낙찰되는 경우 당사는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낙찰대금에서 판매자 수수료와 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낙찰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면 위탁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위탁대금 지급일이 비영업일일 경우 지급일은 그 익일로 합니다.

제 6조 (경매의 방식)

- ① “동아옥션”은 경매 전에 입찰 희망자들이 경매 물품을 미리 살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시회(프리뷰)를 개최합니다.
- ② 도록에 기재된 물품 번호순으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통지 없이 예정된 물품의 경매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 ③ 호가는 전적으로 경매사의 재량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응찰자는 구두로 임의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으나 경매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경매사는 위탁자와 합의한 내정가를 지키기 위하여 내정가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경매사의 입찰은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실제 입찰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입찰이 내정가까지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입찰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 ⑤ 경매사는 최고입찰액을 1회 이상 부르고, 최고입찰자의 입찰판 번호를 지칭함으로써 낙찰자와 낙찰가를 결정합니다.
- ⑥ 경매사는 입찰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거나 입찰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유효 입찰자를 결정할 수 있고, 또 해당 물품을 재경매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제 7조 (입찰과 낙찰)

- ① 경매에는 “동아옥션” 회원 또는 회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입찰할 수 있습니다.
- ② 입찰은 공개입찰, 서면 예약, 전화입찰의 방법이 있습니다.
- ③ 공개입찰은 “동아옥션” 소정의 입찰자격확인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입찰판을 교부받아야 입찰할 자격이 있습니다. 입찰판을 교부받은 회원은 경매장에 참석하여 경매사의 호가에 입찰판을 들어 입찰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 ④ 회원은 “동아옥션”의 소정 절차에 따라 서면예약과 전화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⑤ 낙찰은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돌아갑니다.
- ⑥ 공개입찰자, 전화입찰자와 서면예약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서면예약자에게 우선하여 낙찰됩니다. 동일한 가격의 서면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예약이 먼저 완료된 입찰자에게 우선하여 낙찰됩니다.
- ⑦ 서면예약의 경우는 경매 하루 전 오후 7시까지 동아옥션입찰등록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한 후, “동아옥션” 지정계좌로 예약가의 20%를 예약보증금으로 입금함으로써, 예약처리가 완료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화입찰은 경매 당일 “동아옥션” 직원이 입찰자에게 전화를 걸고, 전화로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단, 전화입찰의 경우 경매 시작가 50만 원 이상인 물품만 가능하며, 물품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당일 경매장에서 낙찰 받지 못하실 경우, 보증 예

- ⑧ 지금은 경매일포함 5일 이내에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당일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는데, 낙찰일 포함 일 이내에 미입금 처리함으로써, 유찰 시킬 경우에는 위약벌로 낙찰가의 30%를 지급해야 하며, 예약보증금에 대해서 “동아옥션”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⑧ 예약된 물품의 현장경매 진행방식은 “동아옥션”이 예약자의 위임을 받아 예약가까지 대리 입찰을하게 됩니다.
- ⑨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한 경매물품에 대하여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제 8조 (동아옥션의 권리 및 책임 한계)

- ① “동아옥션”은 예정 고지한 경매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동아옥션”은 전시회(프리뷰)에 참가를 희망하는 자의 성명과 신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분 증명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아옥션”의 재량으로 전시회(프리뷰)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위탁계약이 성립된 물품에 대하여 “동아옥션”은 홈페이지와 관련 인쇄물에 “동아옥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④ 경매 물품의 진위시비, 거래의 불법성 시비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아옥션”은 위탁물품을 경매에 출품하지 않을 수 있고, 경매에 출품하여 낙찰된 이후에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아옥션”은 위탁자나 낙찰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이외에 손해배상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⑤ 예약에 의한 매수 신청이 있었고 당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실수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해 입찰이 경매에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동아옥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⑥ “동아옥션”은 당사경매 응찰 등록과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등록 또는 신청의 불시행, 지연 또는 등록 또는 신청과 관련한 “동아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또는 대리인의 어떠한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해서도 “동아옥션”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⑦ 위탁계약이 성립하고 “동아옥션”이 경매를 위해 촬영한 작품의 사진 저작권은 “동아옥션”이 가지며, “동아옥션”은 이를 경매 도록 및 홈페이지 사전 전시 및 지속적인 DB구축과 유료 또는 무료 이용자 제공 등에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제 9조 (입찰자의 의무)

- ① 경매 도록에 기재된 작가명, 작품명, 재질, 크기, 출처 등 모든 내용은 “동아옥션”의 의견일 뿐 절대적 사실이 아닙니다.
- ② “동아옥션”은 경매물품을 [있는 그대로] 출품합니다. 입찰자는 경매이전에 입찰희망 물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동아옥션”이 경매 물품의 상태 및 속성과 관련해 제공하는 설명명과 물품이미지 가운데 위탁자는 약관 13조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입찰자는 작품의 훼손 및 복구 여부, 도록 기재의 오류 및 생략 부분, 작품 이미지와 실물의 차이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경매에 참여해야 합니다. “동아옥션”은 입찰자가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전제 하에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 ③ 위의 ①,②항은 공개입찰자, 전화입찰자, 서면예약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화입

찰자와 서면예약자는 경매이전에 실물확인 작업이 꼭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①,②항의 미확인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모두 예약자가 지게 됩니다.

#### 제 10조 (중개수수료)

##### ① (판매자 수수료)

위탁수수료는 일괄 10% (부가세 별도)입니다.

예) 낙찰가가 10,000,000원일 경우

$10,000,000 \times 10\% = 1,000,000$ 원의 위탁수수료와 10%의 부가가치세 100,000원을 합산한 1,100,000원이 총 위탁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위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0,000,000원(낙찰가)-1,100,000원(위탁수수료+부가가치세)=8,900,000원입니다.

##### ② (양도세)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 부과는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하며, 단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제외됩니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이며, 매입 원가의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양도가액의 100분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서화, 골동품이란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서화, 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2)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및 석판화
- 3)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 1호의 서화, 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 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지는 것

##### ③ (구매자 수수료)

구매수수료는 낙찰가의 일괄 15% (부가세 별도)입니다.

예) 낙찰가가 10,000,000원일 경우

$10,000,000 \times 15\% = 1,500,000$ 원의 낙찰수수료와 10%의 부가가치세 150,000원을 합산한 1,650,000원이 총 낙찰수수료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10,000,000원(낙찰가)+1,650,000원(위탁수수료+부가가치세)=11,650,000원입니다.

#### 제 11조 (낙찰대금 납부와 물품인도)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비영업일 포함, 낙찰가가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경매 물품 대금, 낙찰 수수료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총 구매비용)을 완납해야 합니다. 단, 낙찰가 3억 원 이상일 경우 구매자는 5일(비영업일 포함) 안에 20%의 금액을 선납해야 합니다. 납입기일이 비영업일일 경우에는 익일을 납입기일로 합니다.

②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낙찰가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총 구매대

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동아옥션”이 정하는 소정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위약별로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위약벌의 약정은 “동아옥션”과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아니하면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는 다음의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동아옥션”은 낙찰자가 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철회하고 재경매 및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11조 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위약 벌로 낙찰대금의 30%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 위약벌의 약정은 “동아옥션”과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동아옥션”은 위탁자가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위탁자에게 낙찰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⑤ 낙찰자는 총 구매대금을 “동아옥션” 지정의 은행계정송금, 자기앞수표, 현금 등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주)동아이지에듀 동아옥션 경매 계좌번호:1005-903-401742(우리은행)>

⑥ 낙찰자는 입찰 전에 “동아옥션”과의 합의에 의하여 구매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⑦ 낙찰자는 대금완납 후 7일 이내에 구매한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물품 인수가 지연되는 경우에 “동아옥션” 규정의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대금완납 후 7일이 지나도록 물품을 인수해 가지 않는 경우 해당 물품 손상에 대한 책임은 “동아옥션”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 12조 (운송과 보험)

##### ① (운송)

위탁자나 낙찰자가 물품의 운송을 원하는 경우, 당사는 위탁자나 낙찰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물품의 배송 및 보험가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낙찰된 물품은 직접 수령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보험)

위탁자는 “동아옥션”에 경매물품을 인도할 때로부터 “동아옥션”에서 보관관리를 중지하는 시점까지 또는 경매예정일로부터 50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동아옥션”이 만족할만한 보험 증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동아옥션”은 위탁자가 원하는 경우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보험가입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제 13조 (보증과 원상회복)

① 물품의 위탁자는 경매물품에 대하여 도록 상 첫 줄에 굵게 인쇄된 표제사항에 대하여만 보증합니다. 단, 경매진행 중 경매사의 구두 물품설명은 위 보증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이 외에 도록에 실린 보조설명이나 추정가, 기타 당사 직원이 구두나 글로 표현한 내용은 참고자료일 뿐 보증의 내용이 아닙니다.

② 낙찰품이 화폐인 경우는 경매 현장 내에서만 ①이 적용됩니다.

③ 낙찰자가 원하는 경우 물품의 위탁자는 위 보증의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④ 물품의 위탁자의 보증기한은 낙찰일로부터 3년까지(외국물품은 제외)이며, 이 기간 중 보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동아옥션”에서는 본 경매의 낙찰을 취소처리 하게 되며, 물품의 위탁자는 당연히 낙찰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낙찰대금 환불)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위탁자는 본 거래로 인한 기존의 중개수수료(판매자 수수료)에 대해서도 “동아옥션”에 환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증 책임의 문제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합니다.

1) 낙찰자가 물품의 위탁자의 보증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낙찰자는 해당 작품이 거래된 경매 일자와 물품 번호, 문제제기의 납득할 만한 근거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2) 낙찰자는 물품의 위탁자의 보증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을 갖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내지 물품 위탁자에게 서면 청구해야 합니다.

3) 낙찰자는 해당 작품을 경매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물품의 위탁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⑤ 낙찰자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 물품의 위탁자와 낙찰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국내의 제 3기 관감식 결과에 따라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국내의 제 3기관 지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되 상당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동아옥션”에서 직권으로 제 3기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 감식비를 양 당사자가 “동아옥션”으로 입금 완료하면 지정된 제 3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본 감정비를 부담합니다. “동아옥션”에서 반품 시 위와 같은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로서는 아니며, 다만, 현장경매 운영자로서 경매의 공정성을 담보함으로써 경매의 신뢰성을 유지·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위의 절차에 비협조적이거나 감식결과에 따라서는 계약위반, 매매부적합물 등록, 불공정경매조성 등의 이유로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할 수 있을 뿐, 결국은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당사자 문제입니다.

⑥ (보증제의 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 1) 경매 당시에 경매물품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으나, 이후 전문가의 의견이 변경되었거나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경우
- 2) 학계나 전문가 집단에서 이견의 가능성을 도록을 통해서나 경매장에서 고지를 한 경우
- 3) 경매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나 비현실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드는 방법 또는 파괴분석을 해야 하는 방법으로 보증내용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경우

⑦ 물품의 위탁자가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해당 물품의 위탁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갖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해당 물품에 대한 기 낙찰수수료(중개수수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⑧ 보증항목에서 보증하는 내용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 내용은 처음 구매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첫 구매자가 3년 이내에 사망하여 해당 물품이 상속되었을 경우 보증 내용은 그 상속인에게 양도됩니다.

⑨ 물품의 위탁자의 보증 책임은 낙찰자가 “동아옥션”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 한하며, 어떠한 경우도 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즉 당사는 이자나 통화까지 변화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14조 (약관의 개정 등)

① “동아옥션”은 이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동아옥션”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동아옥션”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제 15조 (문화재 보호법)

① 위탁자 관련사항

위탁자는 경매 위탁 물품 중 문화재 및 유물의 위탁 시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사에 위탁경매된 문화재 및 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것일 경우에는 위탁자는 위탁대금 전액의 환불 및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관하여 “동아옥션”은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② 구매자 관련사항

구매자는 경매 시 문화재 및 유물을 구매할 경우에 국외로의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되어있음을 인지합니다.

제 16조 (재판관관할 및 준거법)

① “동아옥션”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② “동아옥션”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